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76
----------	-------

제출년월일 : 2021. 7.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공직자 부조리 신고대상의 공직자 범위와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부조리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안 제2조)
- 나.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으로 확대(안 제4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안 제1조~제3조, 제5조~제12조)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1. 6. 3. ~ 6. 23.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5) 제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2021. 6.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마포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 나.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 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라. 임원 선임 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2조제2호 중 ““부조리”라 함은”을 ““부조리”란”으로 한다.

제3조 중 “부조리신고”를 “부조리 신고”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를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한”을 “부조리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른”으로 하며, “마포구”를 “구”로,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을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를 “별지 서식에 따른 부조리 신고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보상금”을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부조리신고보상금”을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부조리신고보상금”을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을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로 하며,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검토 하여야”을 “검토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 중 “부조리신고”를 “부조리 신고”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신고 된”를 “신고된”으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u>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u>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공무원 등” 이라 함은 구 소속 공무원,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u></p>	<p>제1조(목적) ----- - <u>마포구</u> ----- ----- ----- ----- ----- ----- ----- ----- -----.</p> <p>제2조(정의) ----- -----.</p> <p>1. <u>“공무원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 가. <u>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공무원</u> 나. <u>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u> 다. <u>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u> 라. <u>임원 선임 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동의</u></p>

· 추천 · 제청 등이 필요하
거나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
· 임명 · 위촉하는 기관 · 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에 대
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1. ~ 4. (생략)

제4조(신고기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부조리”란 -----

-----.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신고는 부
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전, 물
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
로 한다.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만포구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나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

② 부조리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 구

--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 할 -----
-----.

③ 별지 서식에 따른 부조리 신고서-----

-----.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 각 호-----
-----.

1. ~ 6.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

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 -----

-----.

② 제1항에 따른 -----
-----.

1. 부조리 신고보상금 -----

2. 부조리 신고보상금 -----

③ -----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
----- 관계 공무원 -----
----- 검토하여야 -----.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3조에

따른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된 사항
3. (생략)
4.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한다.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

-----.

③ -----
----- 해당 -----

-----.

제9조(보상금 지급제외) -----
----- 부
조리 신고-----
-----.

1. (현행과 같음)
2. -----
신고된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10조(환수) -----
----- 따른 -----

-----.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생략)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 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 제1항에 따른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

----- 따라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감사담당관 강승혁 (☎ 3153-8164)